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80
----------	-----

2023. 9. 19.(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국기 의원
- 나. 발의일자 : 2023년 8월 28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30일
-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 9월 7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국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및 결과보고(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충청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 가. (필요성)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상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 나. (절차적 타당성)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
- 다. (법적합성) 충청북도의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각종 사업을 촉진, 도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에 근거하여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5. “자율상권조합”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7.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을 반영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매년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율상권조합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제9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

2.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3.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통상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상권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상권활성화 또는 상가임대차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마.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및 협력)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 한 곳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7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활성화구역을 승인하려는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상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상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사업의 시행)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경영지원 사업
4. 환경·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판로지원·홍보 등 지원
3.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경영 지원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3. 사업 완료 후 효과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 방안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비용 발생 요인

-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 충청북도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위원회 운영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 조례안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 조례안 제9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및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 조례안 제5조 및 제8조의 경우 우리도 사례가 없어 비용추계 불가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지역상권법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 지원(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 충청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운영

나. 추계 결과

-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200,000천원
- 지역상권법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 사업(중기부 공모) : 8,000,000천원
- 충청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운영 : 5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국고보조금(기금), 도비(자체 재원), 시군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계	
세 입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국비보조금(기금)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세 출	1,710,000	1,610,000	1,610,000	1,710,000	1,610,000	8,250,000	
충청북도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00,000			100,000		200,000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8,000,000	
충청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운영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계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8,000,000
	국비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도비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시군비	560,000	560,000	560,000	560,000	560,000	2,800,000
자체 수입	소계	110,000	10,000	10,000	110,000	10,000	250,000
	세외수입	110,000	10,000	10,000	110,000	10,000	250,000